

하느냐, 의원 각자가 의원 윤리강령, 의원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년월일 2001. 3. 13
발 의 자 : 차 성 환 위원
찬 성 자 : 이 해 식 위원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민의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매장(埋葬)중심의 장묘문화가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라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묘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의 의식 전환, 장묘제도의 개선, 장묘시설의 정비 및 확충, 화장시설 및 납골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년월일 2001. 3. 13
발 의 자 : 차 성 환 위원
찬 성 자 : 이 해 식 위원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그리고 관련 각종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년월일 2001. 3. 13
발 의 자 : 차 성 환 위원
찬 성 자 : 이 해 식 위원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지구촌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 대회운영, 시민참여운동 등 제반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2002년 월드컵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년월일 2001. 3. 13
 발 의 자 : 차 성 환 위원
 찬 성 자 : 이 해 식 위원

I.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및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발전과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91. 7월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9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제도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급	정원	정 원 내 용
일 반 직	1	1	지방관리관 1
	4	14	지방서기관 3,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4급 상당 11
	5	23	지방행정사무관 19,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 3,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1
	6	33	지방행정주사 27, 지방통신주사 1, 지방전산주사 3, 지방토목주사 1, 지방전기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 1
	7	26	지방행정주사보 20, 지방건축주사보 1, 지방기계주사보 또는 지방전기주사보 1, 지방전산주사보 3, 지방사서주사보 1
	8	4	지방행정서기 3(계약직 라급 1), 지방사서서기 1
	9	2	행정(계약직) 2
	소계	103	
	별 정 직	7	6
8		9	별정직 8급 상당(의장비서 1, 편집요원 1, 속기요원 7)
9		7	별정직 9급 상당(속기요원 7)
소계		22	